

" 해외수산자원 개발 · 생산 · 수출 증대의 해 "



(특)한 국 원 양 산 업 협 회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 목 명예해양수산물 추천 의뢰

1. 우리 해외수산협력센터에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연안국의 원양 산업 정보수집 등을 위해 9개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8개국에 대해서만 위촉하고 있어 부족한 1개국에 대한 추가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2. 따라서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3. 4. 28.(금)**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김단비 행정관(lluvia@kofci.org/044-868-7837)

붙임 1. 명예해양수산물 자격요건

2. 명예해양수산물 추천서 1부(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ofis.or.kr)공지사항 참조). 끝.

(특)한 국 원 양 산 업 협 회 회 장



수신처 : 한국원양산업협회 전 회원사, 해외수산투자협의회 전 회원사, 원양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업계

담당

김단비

팀장

이희진

센터장

이상목

전결 2023.4.17

협조자

시행 해외수산협력센터-239

(2023.4.17)

접수

(. .)

우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53 에스빌딩 6층 / www.kosfa.org

전화 044)868-7837 전송 044)868-7840 / 담당자 이메일 lluvia@kofci.org

- 근거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9조 (명예해양수산물관의 자격 등)
- 자격 : 1.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교민
2. 연안국 교민단체의 임원
3. 연안국 국민 중 원양산업 관련 전문가
4. 연안국 정부나 연구소에서 원양산업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
5. 그 밖에 연안국과의 원양산업에 관한 협력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임무 : 1. 연안국의 원양산업 관련 자료·정보의 수집
2. 연안국의 원양산업 투자환경 조사
3. 대한민국 국민의 연안국 투자에 대한 조언
- 임기 :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추천 접수 후 명예해양수산물관 운영지침 및 명예해양수산물관 운영세칙 제6조에 따라 대상자 추천의 투명·공정성을 위하여 “**명예해양수산물관 위촉대상자 추천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자 위촉
- 위촉 된 명예해양수산물관은 명예해양수산물관 운영지침 및 명예해양수산물관 운영세칙 제4조에 따라 정기보고 (월 1회), 수시보고 제출 수행 필수
- 매월 활동 수당(약400US\$)을 지급 하고, 반기별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지급

대한민국 명예해양수산물 추천서

▣ 추천지역 :

(1) 성명	(한자) (영문)		
(2) 국적		(3) 현지 거주(또는 체류)기간	
(4) 주민등록번호 또는 I.D. No.			
(5) 현 거주지 주소 및 연락처			
(6) 현 직업		(7) 수산물 관련 업무경력 유무 및 경력기간	년
(8) 추천 대상자 주요 이력사항			
(9) 추천 사유			
상기인을 대한민국 명예해양수산물관으로 추천합니다.			
추천자 소속 및 직위 :		2023 . .	성명 : (인)